**TruEdu영국영어캠프 학부모 동의서**

UK & International Trade(이하 "TruEdu")와 참가학생(이하 "참가자"), 학부모님(이하 "학부모")은 TruEdu

영국영어캠프(이하“캠프”)를 진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.

제 1조 (목적)

본 계약은 "TruEdu" 와 "참가자", "학부모" 가 "TruEdu" 의 캠프 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제반 협력 사항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한 계약 이행 및 원만한 거래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"TruEdu" 와 "학부모" 공동의 이익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기본 준수 사항)

1. "참가자" 는 캠프 규정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.

② "참가자" 는 캠프기간 동안 다른 참가자의 캠프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 또한 정해진 캠프일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캠프진행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.

1. "참가자" 는 인솔자에게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.

④ "참가자" 는 참가국의 국가법 및 주 법률을 준수 하며, 이를 어길 시 중도 귀국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"TruEdu" 에 일체의 책임을 요구하지 않는다.

⑤ "참가자" 는 캠프기간 동안 캠프 장소에 비치된 집기와 비품을 분실하거나 고의로 파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 고의로 발생된 파손 비용에 대하여 배상할 것을 약속한다.

1. "참가자" 는 캠프기간 동안 고가의 현금과 물품 소지를 자제한다. 귀중품 및 소지품은 "참가자" 자신이 보관할 책임이 있으며, 개인 소지품의 분실, 파손 등에 대해서는 ""TruEdu" 에 일체의 책임을 요구하지 않는다.
2. "학부모" 는 "참가자" 의 부주의나 우발적인 행동으로 발생한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 "TruEdu" 에 일체의 책임을 요구하지 않는다. 아울러 이 같은 행동으로 다른 참가자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주거나 신체에 상해를 입혔을 경우 충분히 배상한다. 단, "TruEdu"는 참가자들이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최대한 관리할 의무가 있다,
3. "학부모" 은 캠프기간 동안 발생되는 기초적인 의료행위나 응급처치를 제외한 평소의 지병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되거나 전문적인 의료조치가 요구되는 사항이 발생할 시 "TruEdu" 에 일체의 책임을 요구하지 않는다.

제 3조 (중도 귀국 조치)

1. "참가자" 는 참가국의 국가법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거나 "TruEdu" 의 이미지를 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할 경우 "참가자" 에게 경고조치를 할 수 있으며, "참가자" 가 시정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을 경우 중도 귀국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2. 캠프기간 중 학생들 간의 폭력행위(싸움), 고의적인 수업방해 등 프로그램을 방해할 경우 귀국조치를 할 수 있다.
3. 향수병, 현지 부적응 등으로 인하여 "참가자" 와 "학부모" 가 원할 경우 중도 귀국조치를 할 수 있다.
4. 위의 사항으로 중도 귀국 조치를 받을 경우 캠프 잔여기간에 대한 캠프 비용은 반환 받을 수 없으며, 중도 귀국으로 인한 소요경비는 "학부모" 가 선납으로 모두 부담하여야 한다.

년 월 일

|  |  |
| --- | --- |
| "TruEdu"  회사명 : UK & International Trade  주 소 : 90A Burlington road, London,  KT3 4NT  대 표 : 김 태 영 인 | “학부모”  참가학생명 :  주 소 :  전화번호 :  학부모 성명 : 인 |

**TruEdu영국영어캠프 이용약관**

◎ 제 1 조(목적)

이 약관은 UK & International Trade(이하 “회사”)가 제공하는 TruEdu영국영어캠프 (이하“캠프”)의 제반 서비스 이용조건 및 절차,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◎ 제 2 조(용어의 정의)

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
① 참가자: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본 약관에 동의한 캠프참가 학생을 말합니다.

② 해지: 회사 또는 이용자가 서비스 개시 후에 그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.

③ 서비스: 회사에서 제공하는 캠프 등 모든 행위의 일체를 포함한 총체적인 표현입니다.

④ 계약금: 프로그램 신청 시 선납되어야 하는 금액으로 캠프학교 예치금과 행정수수료를 말합니다.

⑤ 참가비: 총 캠프 비용에서 계약금을 뺀 나머지 비용을 말합니다.

◎ 제 3 조(계약의 성립)

① 이 계약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계약서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참가학생에게 제시하며, 참가학생이 이를 승낙하고 서명함으로써 성립합니다. (프로그램 특성상 참가학생은 미성년자이므로, 서명은 보호자가 합니다.)

② 참가신청 동의서에 따로 약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이 계약에 의하기로 하고, 만일 이 계약과 참가신청 동의서에 정하는 사항간의 상충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참가신청 동의서에 정하는 사항을 우선하기로 합니다.

◎ 제 4 조(회사의 의무)

① 회사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,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.

② 회사는 참가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참가자의 보안 및 보호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.

③ 회사는 천재지변 및 현지 사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일정이 변경 될 시 변경 이전 또는 변경 이후 학생의 보호자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.

④ 회사는 동의서 및 약관에 의거한 참가학생의 의무사항 외 발생되는 학생의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할 의무와 책임이 있으며, 사고로 인한 배상을 위하여 여행자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.

◎ 제 5 조(참가자의 의무)

① 참가자는 이 약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, 기타 회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.

② 참가자는 주소 및 연락처 등 이용 신청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를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.

③ 참가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승낙 없이 복사, 복제, 개조, 번역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.

④ 참가자는 회사에서 승낙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.

⑤ 참가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, 만약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

회사는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
\*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행위

\*선량한 풍속,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

\*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

\*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건전한 행위

⑥ 참가자는 이 약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, 기타 회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.

◎ 제 6 조(중도 귀가조치)

① 회사는 참가학생이 서비스 규칙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거나 프로그램의 이미지를 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할 경우 참가학생에게 경고조치를 할 수 있으며, 참가학생이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중도 귀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
\* 특히 참가기간 중 학생들 간의 폭력행위(싸움), 고의적인 수업 방해 등의 행위 유발자는 즉시 귀가초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
\* 현장학습 부적응으로 인하여 본인과 부모가 원할 경우 중도 귀가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
② 참가학생은 제 ①항에 의거하여 중도귀가조치를 받을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대한 나머지 참가비용을 반환 받을 수 없으며, 이로 인한 소요경비는 참가 학생의 부모가 선납으로 모든 경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.

◎ 제 7 조 (양도 등의 금지)

① 참가자는 서비스 이용 권리를 타인에게 대여, 양도 또는 증여 등을 할 수 없으며, 또한 질권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◎ 제 8 조(손해배상 및 면책조항)

① 참가자가 회사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

② 회사는 이용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

③ 천재지변, 불의의 재해, 정부의 명령, 공공단체의 명령, 전란, 정변, 항공기 납치, 항공기사고, 폭동, 상해, 잔병 등 회사에 귀책 되지 않은 사유로 발생한 신청자의 피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④ 신청자의 귀중품 및 소지품은 신청자 자신이 보관할 책임이 있습니다.

⑤ 캠프 기간 중 인솔자 및 현지 스텝의 규칙을 무시하고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⑥ 캠프 기간 중 향수병 또는 부적응 자는 학부형과 협의 후 퇴실 조치할 수 있으며 환불은 불가합니다.

◎ 제 9 조(분쟁 해결)

① 회사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 보상처리 기구를 설치·운영합니다.

② 회사는 참가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. 다만,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참가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줍니다.

③ 회사와 참가자 간에 발생한 거래분쟁에 관한 소송은 회사의 소재지(대한민국, 서울)의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.

④ 회사와 참가자 간에 제기된 거래분쟁 소송에는 한국 법을 적용합니다.

◎ 환불규정

- 재정경제부 ‘소비자피해보상규정’에 의거 아래의 환불규정을 공지합니다.

(1) 캠프 신청 시 납입한 계약금은 학교예치금 및 일정에 따른 각종 예약비용 등의 행정비용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취소 시 환불이 불가능

(2) 출국일 30일전까지 취소 시: 계약금 외의 참가비의 10%를 공제한 나머지 환불

(3) 출국일 29일~20일전까지 취소 시: 계약금 외의 참가비의 20%를 공제한 나머지 환불

(4) 출국일 19일~10일전까지 취소 시: 계약금 외의 참가비의 30%를 공제한 나머지 환불

(5) 출국일 9일~5일전까지 취소 시: 계약금 외의 참가비의 50%를 공제한 나머지

(6) 출국일 4일~출국 이후: 환불 불가

(1),(2),(3),(4)번 항목에 대한 사항은 캠프 종료 후 30일 이내에 환불 됩니다.

년 월 일

|  |  |
| --- | --- |
| “갑”  회사명 : UK & International Trade  주 소 : 90A Burlington road, London,  KT3 4NT  대 표 : 김 태 영 인 | “을”  참가학생명 :  주 소 :  전화번호 :  학부모 성명 : 인 |